

# 검 토 보 고 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진아 의원**

**외 7인**

( 2011. 12. 2 )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명 금 길 ]**

##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1년 11월 10일
- 제 출 자 : 오진아 의원 외 7인

## 3. 의안 회부일자

- 2011년 11월 22일

## 4. 근거법령

- 「친환경 농업육성법」
-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검토보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동 조례안은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구민들에게 다양한 도시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의 체험이나 학습기회를 통하여 개인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함과 동시에 친환경 녹색 공간을 확충하여 살기 좋은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것임

### < 개 요 >

- 동 조례안은 전문 제5장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제2장에서는 도시계획의 수립 및 도시농업에 반영, 제3장에서는 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관한 사항, 제4장에서는 도시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장에서는 보칙으로서 보조금 교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관리조례」의 준용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칙에서는 시행규칙으로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음

### < 주요내용 >

- (1)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마포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

- (2) 안 제5조에서는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이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부지확보 등이 도시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함
- (3) 안 제7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의원 1명 마포구 소속 4급 내지 5급 공무원 3명 이내,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4) 안 제14조에서는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5) 안 제15조에서는 친환경 도시농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6) 안 제17조에서는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7) 안 제18조에서는 조례에 따라 설치·조성된 도시농업관련 시설 및 용지의 운영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검토의견 >

○ 동 조례안은 구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 거리인 우리 농산물을 자발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역할을 비롯하여 체험이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구민들이 친환경적인 농산물의 재배 및 소비는 물론 농산물의 단계적인 생산과정 및 유통구조 등의 축소로 인한 에너지 낭비와 온실가스 등을 감축시켜 자연과 사람을 함께 배려하는 친환경적인 녹색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를 보전하고 토지의 이용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의적절한 조례로서, 이와 관련된 상위 법규인 「친환경 농업육성법」,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배됨이 없고, 절차상으로도 우리 의회의 입법예고는 물론 집행부의 의견 조율 등을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